

사회복지정보·자원연구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과 위치) 본 연구소는 서울신학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 부설 “사회복지정보·자원연구소”(Research Center For Social Welfare Information Resources) (이하 본 연구소)라 칭하고 본 대학교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 연구소는 사회복지의 전문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특히 기독교 정신에 의거하여 사회복지 자원과 정보가 사회복지발전에 중요성이 강조되는 자금에 상황에 부응하여 학술대회 개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자료의 개발 등을 실시 하려고 한다.

제3조 (사업)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전문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
2.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연구조사
3. 사회복지사 및 슈퍼바이저의 사회복지 연수과정 설치 운영
4. 사회복지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사회복지 단체들과의 자료교환 및 학술교류 사업
6. 세미나, 강연회, 학술회의 등의 개최
7. 학술지, 전문도서, 연구자료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기구 및 임직원

제4조 (기구)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 연구소의 연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본 연구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임직원) 본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장 1인
2. 운영위원 약간인
3. 연구위원 약간인
4. 연구원 약간인
5. 간사 1인
6. 조교 약간인

제6조 (자격 및 임명) ① 소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운영위원, 연구위원, 연구원은 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간사와 조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과 후원자는 운영위원, 연구위원 등의 제청으로 소장이 임명하되, 총장

에게 보고를 한다.

④ 조교는 본교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임기) 본 연구소의 모든 임직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교는 조교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8조 (직무)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와 활동을 관장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연구위원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연구원은 주어진 연구를 수행한다.

⑤ 간사는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의 제반업무를 집행한다.

⑥ 조교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본 연구소의 제반연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고, 위원은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자문위원회와 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자문위원회와 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제11조 (재정) 본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총당한다.

1. 대학교 연구 지원비
2. 외부 연구비
3. 사회자원
4. 자체수익금
5. 기타

제12조 (회계년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 대학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제2조 (기타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연구소 설치지침에 준한다.

제3조 (발효)

1. 본 규정은 1988년 8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5년 3월 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정은 1998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정은 1999년 3월 3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0년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한다.